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1762	이연희의원 등 16인	’24.7.16.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8.2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9.2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2727	허영의원 등 16인	’24.8.1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9.2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4090	전용기의원 등 16인	’24.9.19.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9.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4.11.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9.2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